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51 실화

피 고 인 송영주 (000000-00000000), 00

주거 천안시 000 000 000 0000

등록기준지 000 000 000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6. 22:20경 천안시 000 000 0000 00000 0층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000(00세, 0)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다. 당시 집 안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커튼, 가구 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담배불을 완전히 꺼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어 가구 등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매트리스 2개, 서랍장 2개 등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증인 00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00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꾸벅꾸벅 존 사실, 이에 000은 피고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싱크대에 받아둔 물에 빠뜨려 끈 사실, 그런 다음 000은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TV선반 옆에 놓여 있는 종이컵에 담뱃불을 끄고 잠을 잔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